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
지원 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42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상해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(안 제4조 및 제5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,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 -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,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5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국방의 의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이 복무 중에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병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

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됨.  
다만,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음.
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동작구, 마포구, 서대문구가 이미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, 소관부서 비용추계 결과 2025년도 기준 우리구 현역입영대상은 약 450명으로 1인당 보험료 5만원으로 계산시 2,250만원 예산이 소요됨.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